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공고문 2019-제22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목적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된 위탁비용을 지원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독려함

2. 사업 내용

가. 법적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하는 위탁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사업 내용

- (대상기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29개소
- (지원내용) 위탁비용 200만원 × 29개소 (총 5천8백만원)
- (지원 기간) 협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다.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29개소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19.7.3.(수) ~ ‘19.7.17.(수) 17:00까지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위탁비용 지원 의료기관은 붙임의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동시에 공문으로 제출

라. 선정방법

-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는 요양병원 분포에 따라 선착순 총 29개 기관 선정

※ 선착순 지원 예정. 단, 해당 기관의 위탁 협약 가능 범위를 고려해 결정함.

마. 협약체결 및 위탁비용 신청

-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과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5일 이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위탁비용을 신청함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운영계획서, 위탁협약서 등

붙임 1.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서

붙임 3. 위탁운영 계획서 작성 양식

붙임 4.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및 연락처